



대한민국법원 QR코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10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 고 인 1.가. 윤대혁 (010920-), 사회복지무요원

주거 전주시

등록기준지 전북

2.나.다. 김성민 (011105-), 노동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검 사 신명은(기소), 조경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피고인 윤대혁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홍석일, 강민구

변호사 정우진 (피고인 김성민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5. 9. 2.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기기(증 제2호), 휴대폰 유심(증 제3호)을 피고인 김성민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윤대혁

피고인은 2019. 3. 22.경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길 138에 있는 ○○모텔 안에서, 피해자 김은지(여, 당시 17세, 가명)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분을 미리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모델명 : 아이폰 6S 플러스)를 이용하여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2019. 3. 하순경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의 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친구인 김성민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표현한 표현물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위와 같이 제작한 음란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김성민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3.경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윤대혁으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구글 계정과 연동된 드라이브에 위 사진을 저장한 다음, 2023. 5.경까지 위 피고인의 구글 드라이브에 위 1.항과 같이 촬영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

피고인은 2023. 2. 25.경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112길 56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윤대혁에게 위 가.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윤대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은지(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윤대혁 대화내역)

1. 피해 사진(전자우편 접수)

■ 피고인 김성민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윤대혁의 법정진술

1. 김은지(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 34)

1. 녹취록(윤대혁 대화내역), 대화내역(피의자 김성민), 고소인-윤대혁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수사관-박재한 전화통화 녹취록

1. 피해 사진(전자우편 접수), 고소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및 프로필 사진

[성착취물 소지 및 제공의 고의에 관한 판단]

윤대혁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이전으로 자신을 만나 추궁을 하였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3. 22.경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을 촬영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에게 이를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적·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윤대혁의 진술에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윤대혁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꾸며내어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려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윤대혁의 진술에 더하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윤대혁이 촬영 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오랜 친구 관계였던 피고인을 만나 촬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동갑이라고 알고 있었고 윤대혁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할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것임을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과 윤대혁, 박재한¹⁾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

1)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공통지인으로, 이 사건 사진이 촬영된 날에 있었던 피고인 윤대혁과 피해자와의 술자리에 참여하였던바 있다.



생이었던 2019. 3. 하순경 이 사건 사진이 아동·청소년이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임을 알면서 윤대혁으로부터 이를 전송받고 소지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성착취물 소지 및 제공의 고의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윤대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김성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공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윤대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김성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



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둢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피고인 윤대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 제1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피고인이 저지른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김성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윤대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김성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4. 10. 22. 법률 제20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김성민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인 윤대혁]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

피해자의 절친한 친구였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사이에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가 드러나는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사안이다. 위 사진과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제작되면 유포·복제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그와 같은 가능성이 일부 현실화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판단능력이 다소 미숙하고 인격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잘못된 성적 호기심과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촬영 부위가 상당히 민감한 성적 부위는 아닌 점, 제공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점²⁾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김성민]

2)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점(2025. 6. 2.자 참고자료 2면 및 첨부 공탁물회수동의서 참조)을 고려하여 공탁사실 그 자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

윤대혁으로부터 전송받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이 사건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소지하고 이를 전송받은 때로부터 약 4년 뒤 별다른 이유 없이 윤대혁에게 다시 전송하여 준 사안이다. 소지 및 전송의 경위, 소지 기간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소지하면서 제3자에게도 보여주었던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사진 소지 및 전송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점³⁾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양환승	<u>전자서명완료</u>
	판사	김정원	<u>전자서명완료</u>
	판사	최명훈	<u>전자서명완료</u>

- 3)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윤대혁의 공탁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탁에 대하여만 수령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을 고려하여 공탁사실 그 자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본입니다.

2025. 9. 3.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주사 최현진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